

학·연의 공동협력 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함.

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영 제16조)  
핵융합에너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연구시설 등의 확보방안, 운영·공동활용 및 고도화방안이 포함된 확충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도록 함.

마.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연구지원시책의 수립(영 제17조 및 제18조)

- (1) 산·학·연의 연구교류 촉진을 통한 협동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 과학기술부장관은 산·학·연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의 촉진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며 학술활동 지원 및 촉진 시책 등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7년 3 월26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권 오 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무위원 김 영 주  
산업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1995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이라 함은 별표 1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①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동일한 입주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를 말한다)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의 자산을 매수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한한다)에게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 (2)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를 말한다)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제9조의2제1항중 “법 제8조의2 본문”을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3의 제목중 “해외투자요건”을 “해외투자한도”로 하고, 동조중 “법 제8조의3 전단”을 “법 제8조의3제2항”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

11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99인”을 “49인”으로 한다.

제12조의2 단서중 “동호라목 본문 및 동항제2호”를 “동호라목, 동항제2호 및 제4호의4”로 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해산당시에 평가된 조합자산의”를 “조합자산의”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제6조제1항제2호”를 “제6조제1항”으로 하고, 동표의 경영분야란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란의 제7호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표 2의 위반행위란 제6호 및 제7호중 “제12조의2”를 각각 “제12조의3”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제1호라목, 동항제4호의4 및 제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거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④(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창업투자조합 및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분하는 투자수익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8086호, 2006. 12. 26. 공포, 2007. 3. 27.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자금 차입행위를 금지하고,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수익 배분시기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영 제6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의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려는 것임.

(2)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국유재산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입주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자금 차입행위 등에 대한 제한(영 제9조제4항제4호의4 신설)

(1)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에 대하여 투자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자금 거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산 매각을 하는 등의 부당한 자금 수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3) 창업투자회사의 공정한 투자행위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부당한 자금 거래의 압박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다.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수익 배분시기의 확대(영 제15조제1항)

중전에는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시에만 투자자인 창업투자회사에 투자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창업투자회사가 신속하게 재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전에도 창업투자회사에 투자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7년 3 월26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권 오 규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이 상 수